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24
----------	-------

발의연월일 : 2025. 11. 11.

발 의 자 : 추경호 · 서일준 · 김위상
김상훈 · 권영진 · 박충권
고동진 · 김기현 · 이종배
조지연 · 최은석 · 김기웅
안철수 · 박덕흠 · 김장겸
나경원 · 김미애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예치하지 않은 나머지 선수금 등 자산 운용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대다수가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산 운용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특수관계인”을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로 하고,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상대방은 제1항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 거래의 목적 · 상대방 · 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제32조”를 “제27조의3, 제32조”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

제53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

의2 중 “제27조의2제1항을”을 “제27조의3제1항을”로 한다.

9의2.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지배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 -----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특수관계인</u> 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	가. ----- <u>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u> ----- ----- ----- ----- -----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8. · 9. (생 략)	8.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27조의2(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u>

하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켜
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상대
방은 제1항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상
대방으로 하거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
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
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주요 내
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
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
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u>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u> <u>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u> <u>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u>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생략)	제27조의3(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현행 제27조의2와 같음)
제27조의3(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생략)	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현행 제27조의3과 같음)
제3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	제39조(시정조치) ① ----- ----- ----- ----- -----

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제3항·제5항
· 제7항, 제19조, 제20조, 제2
2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제
3항부터 제7항까지·제10항,
제27조의2,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2. (생략)

②·③(생략)

<신설>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

1. -----

-----제27조의3, 제32조-----

2. (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제41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
회는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
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
자 또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
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
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0조(벌칙) ① -----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② (생략) 제5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략) <u><신설></u> 10. ~ 12.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략) 9의2. <u>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u> 10. · 11. (생략) ④ ~ ⑧ (생략)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9. (현행과 같음) <u>9의2.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u> 10. ~ 12. (현행과 같음) ③ ----- -----. 1. ~ 9. (현행과 같음) <u>9의2. 제27조의3제1항을</u>----- ----- ----- ----- 10. · 11.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	---